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목 차

저	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제4조 용어의 정의	-1
	제5조 안전ㆍ보건업무 우선 및 사고ㆍ재해 예방의 의무	-4
	제6조 안전보건경영방침	
	제7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7조의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제8조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및 실행	
A	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	제9조 안전보건관리조직	
	제1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1조 관리감독자	
	제12조 총괄관리감독자	
	제13조 안전관리자	
	제14조 보건관리자	
	제15조 산업보건의	
	제16조 현장 안전보건담당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17조 안전경영위원회	
귦	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	
^1	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신분보장	
	제2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14

제2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결과 등의 처리	
제22조 안전근로협의체	
제4장 안전・보건교육14	
제23조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제24조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	
제25조 정기교육	
제26조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제27조 특별교육	
제28조 물질안전보건교육	
제29조 직무교육	
제30조 교육실시 방법 및 결과의 기록·보존 등17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17	
제31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17	
제32조 작업장 안전조치	
제33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20	
제34조 작업지휘자	
제35조 작업중지	
제36조 위험물질 안전관리	
제37조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7조의2 소방설비 안전관리	
제37조의3 가스설비 안전관리	
제37조의4 압력용기 안전관리	
제37조의5 승강기 안전관리	
제37조의6 기타 안전관리	
제38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	

	제39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 기구 등의 적격품 사용 등	· –24
	제40조 안전검사	· -24
	제41조 교통재해 예방	· -25
	제42조 외부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 -25
	제42조2 옥외근로자 건강관리<신설 2023.08.15.>	· -25
	제42조3 휴일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개정 2024.04.30.>	· -26
	제43조 외부 방문객의 안전보건관리	· -26
	제44조 안전보건점검	· -27
	제45조 안전보건진단	· -27
	제46조 비상조치계획	· -27
	제47조 피난 및 대응훈련	· -28
	제48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 -28
Z	세6장 작업장 보건관리	-28
	제49조 작업환경측정	· -28
	제50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 -29
	제5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30
	제52조 근로자 건강진단	· -30
	제53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 -31
	제54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31
	제5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32
	제56조 자격 또는 면허 등에 의한 취업제한	· -32
	제57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32
	제58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 -32
	제59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 -33
	제60조 휴게시설의 설치 <신설 2022.12.15.>	· –33

제7장 도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33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제62조 도급의 제한 및 승인					
제63조 도급사업 산재예방계획 수립					
제6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5조 도급사업의 사고 및 재해 예방조치34					
제66조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67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제8장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					
제68조 건설공사 안전•보건					
제69조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36					
제70조 안전보건조정자37					
제71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37					
제72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등					
제73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38					
제74조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 체결 <신설 2022.12.15.>					
제9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40					
제75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40					
제76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40					
제77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제78조 산업재해 현황보고 및 기록41					
제79조 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41					
제10장 위험성평가					
제80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42					
제81조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42					

부	칙	-49
7	제96조	변경절차
7	제95조	문서 보존연한
7	제94조	징계
7	제93조	포상
7	제92조	안전문화 확산<신설 2023.08.15.>
7	제91조	안전보건인력 전문성 강화 등
,	제90조	안전보건 제안제도
제]	11장 년	보칙 ·······
7	세89조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및 보존
7	제88조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공유<개정 2024.04.30.>
7	세87조	위험성평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45
7	제86조	위험성평가 사전준비45
7	세85조	위험성평가 절차
7	제84조	위험성평가 방법
7	제83조	위험성평가 주기
7	제82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규정

2019. 10. 25 제정 (규정 제1244호) 2020. 12. 30 전부개정 (규정 제1309호) 2021. 12. 13 일부개정 (규정 제1355호) 2022. 04. 26 일부개정 (규정 제1374호) 2022. 12. 15 일부개정 (규정 제1394호) 2023. 08. 15 일부개정 (규정 제1436호) 2024. 04. 30 일부개정 (규정 제1465호) 2025. 01. 21 일부개정 (규정 제1497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 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6.>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내·외 도급사업의 수급인 및 그 수급인 그로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2.13.>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시행령 및 규칙, 취업규정, 단체협약과 그 밖의 정부 지침 등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안전 관계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해당 기준을 같이 따른다.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로자"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임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13.>
 - 2.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 3.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로자의 건 강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4. "안전사고"(이하"사고"라 한다)란 공단의 시설 및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명 피해와 건강장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특정 사건을 말하며, 여기에는 인적 및 물적 손실 이 없는 아차사고 등도 포함한다.
- 5. "아차사고"란 근로자의 부주의나 장비·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 하였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 6. "산업재해"(이하"재해"라 한다)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재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사망

- 나. 중상 : 3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
- 다. 경상 : 휴업일수 3일 초과 3주 미만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
- 라. 불휴상 : 휴업일수 3일 이하로 통원치료와 안정가료만으로 치유가 가능한 재해
- 7. "중대사고"라 사고 및 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중대재해
- 나. 제9호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다.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 피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방문객 등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
- 8.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9. "중대산업사고"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등에서 발생한 누출·화재·폭 발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가 즉시 피해를 입거나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인적·물적 피 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 10. "안전·보건표지"란 유해·위험장소 또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를 위한 사항을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기호 및 글자등으로 표시하여 안전사고 또는 건강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 11. "안전·보건진단"이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의 발견과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1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개정 2023.08.15.>
-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4.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3.08.15.>

- 15. "안전작업허가"란 유해·위험요인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발급·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 간작업허가 등이 있다.
- 1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공단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물품의 구매 및 제조(계약내용이 물품의 제조 및 단순 납품에 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공 단 사업장 내에서 부수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공사
- 다. 하자보수 등의 수선
- 라. 시설관리·경비·청소·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과 같이 공단 사업과 무관한 그 밖의 부수적인 업무
- 17.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18.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및 그 밖의 공단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 19. "수급인"이란 공단과 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단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20.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아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21.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22. "주관부서"란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본사 안전 ·보건 관리부서를 말한다.
- 23. "소관부서"란 이 규정에 따른 안전 · 보건관리사항을 실제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 24. "관리감독자"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부서장, 팀장, 소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13.>
- 25."근로자대표"란 공단 단체협약에 따른 대표 교섭단체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
- 2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노조), 사업자 단체, 산재예방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7. "방문객 등"이란 공단의 시설 및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민원인을 포함하여 공단의 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한 사람
- 나. 공단의 시설 및 사업장 인근 지역의 주민
- 다. 공단의 시설 및 사업장 외부 작업현장 인근에 체류하거나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자
- 28.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 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포함한 각종 안전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 29.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4.26.>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30. "중대시민재해"란 공단이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개정 2022.04.26.>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사고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제5조(안전·보건업무 우선 및 사고·재해 예방의 의무) ① 공단의 모든 업무는 안전 및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이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요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③ 모든 임직원 등은 자신과 방문객 등의 인명과 안전 및 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이 규정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의 준수
 - 2. 공단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준수
 - ④ 이 규정 제1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이 이행되도록 공단 안전·보건관리 직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⑤ 부서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이하 "관리감독자"라한다)는 소관 업무 및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직무를 수행하여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⑥ 제5조제7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4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이 규정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⑦ 이사장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책임이 이 규정에 따라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

- 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임직원 등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 2. 안전·보건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보건분야 근로자의 전문성 제고
- 3. 안전 · 보건 관련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 4.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시 안전 · 보건관리 및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
- 5.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지원 및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 6. 공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와 방문객 등에게 제공
- 7. 임직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지원
- **제6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이사장은 각종 직무수행에 있어서 근로자와 방문객 등의 생명과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안전·보건에 관한 이사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공단 내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① 이사장은 공단 사업장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의2(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① 이사장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6.>
 - 1. 안전 ·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6.>
- 1. 유해 ·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3.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이행 여부 점검
-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5.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제8조(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및 실행) ① 이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해당 연도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 2. 다음 연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 3. 다음 연도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인원 및 역할
 - 4. 다음 연도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 5. 다음 연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개정 2023.08.15.>
 - 6. 그 밖에 다음 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확정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토대로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해당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 받고, 다음해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8.15.>
 - 1. 전년도 기본현황
 - 가.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
 - 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개정 2023.08.15.>
 - 다. 안전 조직 구성 · 인원 현황 및 역할
 - 라. 안전 예산 현황
 - 마. 위험성평가 이행 · 추진현황
 - 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 2. 전년도 실적 및 평가
 - 가.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 · 실적
 - 나.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 라.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의 노력과 성과

- 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 3. 해당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제2장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제9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1.12.13.>
 - ② 안전보건관리업무는 안전·보건 관리부서에서 총괄하되, 그 세부 업무분장은 「직제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3.>
 - ③ 이사장은 별표 1의 안전보건관리조직 상 직책이 있는 임직원이 공석인 경우 지체 없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이사장은 공단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5.01.21.>
 - 1.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사장
 - 2. 부설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설기관장
 - 3. 지역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역본부장
 - ② 이사장은 본사 관리감독자 및 부설기관·지역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드론센터 총괄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5.01.21.>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21.>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이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4. 근로자의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5.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6.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3.>
 - 7.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8.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9.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10.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4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30.>
 - 11.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근로자와 방문객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1항 단서에 의해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계획과 내부방침을 수립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1.21.>
- 제11조(관리감독자) ① 이사장은 해당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그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관할 조직의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현장안전보건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법 제36조에 의해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개정 2024.04.30.>
 - 가.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 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7.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시작 전 점검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
 - 8. 그 밖에 이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
- 제12조(총괄관리감독자) ① 이사장은 특정 지역·사업장 또는 사업내용에 관하여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필요한 직위에 보직된 상위 관리자를 총괄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 1. 관할 부서에 속한 하위부서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 2. 관할 부서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선임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도·조언에 협조
 - 3. 관할 부서에서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수반되는 응급조치, 원인 조사·분석,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휘·감독
 - 4. 관할 부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 사고조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장감독・조사 수검 총괄
 - ② 총괄관리감독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안전관리자) ① 이사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는 소속 사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제2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개정 2024.04.30.>
- 2. 위험성평가에 관한 안전관리 분야 보좌 및 지도·조언
- 3. 제39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안전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개정 2024.04.30.>
-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안전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안전관리 분야로 한 정한다)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9. 업무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 유지
- 10. 그 밖에 이 규정 및 공단 「취업규정」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
- ③ 이사장은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14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건관리자) ① 이사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보건관리자는 소속 사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제2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개정 2024.04.30.>
 -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건관리 분야 보좌 및 지도·조언
 - 3. 제39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보건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개정 2024.04.30.>
 - 4.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제5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보건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보건관리 분야로 한 정한다)
 -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1. 업무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 유지
- 12. 그 밖에 이 규정 및 공단 「취업규정」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건에 관한 사항
- ③ 이사장은 시행령 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보건관리자가 시행령 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호에 따른 의사, 제3호에 따른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및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5조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04.30.>
- 1. 건강관리실(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 관리 직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⑤ 이사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14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산업보건의) ① 이사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건강 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거나 외부에서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개정 2024.04.30.>
 - 2.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위탁한 경우 <개정 2024.04.30.>
 - ② 산업보건의는 소속 사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
 - ③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이사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14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현장 안전보건담당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이사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선임되지 않은 등해당 직무를 수행할 직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또는 부서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관리감독자를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현장 안전보건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08.15.>
 - ② 현장 안전보건담당자는 소속 사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또는 부서 내 안전 ·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2. 사업장 또는 부서 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3. 사업장 또는 부서 내 작업환경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사업장 또는 부서 내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사고 및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③ 관리감독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부서의 직원 중 적정한 기간 동안 현재 종사 중인 직무를 수행하거나 소속에 근속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로 임명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08.15.>
- 1. 사업장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 ㆍ 기구 자체검사 참석
-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9. 안전 ·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은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33조에 따른다. <신설 2023.08.15.>
- 제17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이사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안전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②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장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각 사업장에 근로

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근로자대표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7명(위 각 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총 9명에서 그 위원을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근로자(이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이사장(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이사장이 지명하는 7명(위 각 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총 9명에서 그 위원을 제외한수를 말한다) 이내의 부서장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⑥ 삭제 <2023.08.15.>
-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이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 제·개정 사항 <신설 2023.08.15.>
-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결과 등의 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명단
 -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 ④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이 규정과 단체협약, 공단 「취업규정」 및 관계법령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하며,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1.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 송이나 사내보 및 전자문서시스템 게시, 교육 및 조회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 ⑦ 공단과 모든 근로자는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의결하거나 제5항에 따라 중재 결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안전근로협의체) ① 이사장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상시 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도급 발주한 경우 각 사업장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대표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발주건설공사는 제외하며, 경비, 조경, 청소 등 용역서비스 및 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도급사업도 포함해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08.15.>

- ②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며, 수급인의 노사대표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여 도급받은 사업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과 차별 신고 및 기타 개선 요청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수급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여야한다. <개정 2021.12.13.>
- ③ 수급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9(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자신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자신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 · 보건교육

- 제23조(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② 제3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다른 안전 관계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교육계획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제24조(안전·보건교육의 종류) ① 안전·보건교육은 공단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정기교육 : 사업장의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2. 채용 시 교육 :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
 -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는 교육
 - 4. 특별교육 :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는 교육
 - 5. 물질안전보건교육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 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실시하는 교육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되는 경우
 - 나.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③ 직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신규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지위에 신규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실시하는 교육
- 2.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마다 실시하는 교육
- **제25조(정기교육)** 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4.30.>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2. 사무직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가목 <개정 2024.04.30.>
 - 2. 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자 :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 의2호가목 <개정 2024.04.30.>
- **제26조(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4.30.>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신설 2024.04.30.>
 - 3.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②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4.30.>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③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채용 시 교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다목을 따른다. <개정 2024.04.30.>
 - 1. 삭제 <개정 2024.04.30.>
 - 2. 삭제 <개정 2024.04.30.>
 - 3. 삭제 <개정 2024.04.30.>
 - 4. 삭제 <개정 2024.04.30.>
 - 5. 삭제 <개정 2024.04.30.>
 - 6. 삭제 <개정 2024.04.30.>
 - 7. 삭제 <개정 2024.04.30.>
 - 8. 삭제 <개정 2024.04.30.>
 - ④ 관리감독자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직위에 신규로 지정되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의2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하며,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04.30.>

- 제27조(특별교육) ① 제24조제2항제4호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4.04.30.>
 - 1.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2.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3.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4. 산업용 로봇 작업
 - 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7.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8. 그 밖에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라목에서 정한 작업 <개정 2021.12.13.>
 - ②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육의 교육내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기 전 시행하는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4.30.>
 - 1.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간 · 간헐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2시간 이상
 - 2. 제1호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16시간 이상
 - ③ 제2항제1호의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또는 연간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8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교육시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 정 2024.04.30.>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개정 2024.04.30.>
 -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②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 만큼 법 제29조에 따르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 · 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 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위촉·채용 후 3개월 이내 <개정 2024.04.30.>
-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개정 2024.04.30.>
-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위촉·채용 후 3개월 이내(의사가 보건관리자인 경우, 1 년 이내) <개정 2024.04.30.>
-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개정 2024.04.30.>
- 제30조(교육실시 방법 및 결과의 기록·보존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통신교육 및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위탁교육 중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인터넷 원격교육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교육일시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교육을 위탁한 안전· 보건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 또는 수료증 등을 교부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 제31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1. 일반작업 안전수칙
 - 2. 기계 안전수칙
 - 3. 전기 안전수칙
 - 4. 유해 · 위험물질 안전수칙
 - 5. 화학설비 안전수칙

- 6. 고압가스 안전수칙
- 7. 방문객 등에 대한 안전수칙
- 8. 그 밖에 필요한 분야의 안전수칙
- ② 모든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32조(작업장 안전조치) ①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장소 및 통로로 통행하며,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④ 이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 ·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21.>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며 발생하는 건강 장해
- 7. 폭염 ·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및 모든 근로자는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 ⑦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 및 작업장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 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위험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
- 1. 기기정도검사(다만, 재검사 및 환경측정기기검사는 제외)
- 2. 삭도 및 궤도검사(다만, 가설삭도검사, 재검사, 특수시설검사, 시험운행적정성검토 제외)
- 3. 기계식 주차장 검사
- 4.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 5.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 7.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 8. 밀폐공간 작업
- 9.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작업장 작업
- 10.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이상 이동식사다리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 11. 설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가시설물(비계 조립 및 해체, 흙막이 설치 및 해체, 동바리 설치 및 해체 등) 설치 작업
- 12. 화기 사용 작업
- 13. 중량물 취급 작업(크레인 작업 및 5킬로그램 이상 인력 운반 작업)
- 14.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 운반기계 사용 작업
- 15. 건설용 리프트 및 크레인 사용 작업
- 16. 기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위험 작업 및 작업장 <개정 2024.04.30.>
- ⑧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행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일정 조정 등의 안전·보건관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⑨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개정 2021.12.13.>
- 1. 작업 시작 전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점검 실시

- 2.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3. 해당 작업장 입구에 보호구 착용 지시표지 부착 및 보호구 착용 지시
- 4.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 외 방문객 등의 작업장 출입 제한 및 필요한 경우 출입금지·위험장소 경고 등의 표지, 바리케이드·가림막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 5. 안전보건직무 담당자의 배치 및 지휘·감독
- 6. 표준작업안전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 제33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임직원 등은 사업장 내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 취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작업허가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중대한 위반 시에는 작업중지 명령 또는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4.30.>
- 제34조(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 4. 중량물의 취급작업
 - 5. 항타기, 항발기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 6. 그 외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 <신설 2022.12.15.>
- 제35조(작업중지) ① 이사장은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근로자와 방문객 등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도급사업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수급인의 근로자가 대상인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④ 이사장은 천재지변 및 폭염, 한파, 호우 등 경보발령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상기후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로자가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 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13.>
- 제36조(위험물질 안전관리)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에서 정하는 폭발, 발화, 인화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식성, 독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위험물질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13.>
 - ② 위험물 취급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③ 위험물 취급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 시설 및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 및 방문객 등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 제37조(전기설비 안전관리) ① 이사장은 각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수용설비의 용량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그 직무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4.30.>
 - ② 전기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 통상자원부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전기·기술·토목 분야에 따른다. <개정 2024.04.30.>
 - ④ 관리감독자는 전기화재사고 및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위험이 있는 충전 및 감전 위험부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절연, 접지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제37조의2(소방설비 안전관리) ① 이사장은 각 사업장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21.12.13.>
 -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2.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개정 2021.12.13.>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21.12.13.>

- 4. 소방훈련 및 교육
-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 관리 <개정 2021.12.13.>
- 6. 화기취급의 감독
-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④ 이사장은 공단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
- 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의3(가스설비 안전관리) ① 소관부서는 각 사업장에 고압가스 등 가스의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각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고압가스, 액화가스, 도시가스 등 폭발 우려 가스를 취급 시 안전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③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가스 사용 전 용기 고정상태, 안전장치 이상 여부, 가스 용기 주변 가연성, 인화성 물질 존재 여부, 가스체류 여부 등 확인
 - 2. 가스 사용 중 가스 흐름, 게이지 이상여부 및 누설여부를 수시로 체크할 것
 - 3. 가스 사용 후 반드시 중간 밸브 및 용기 메인 밸브까지 잠글 것
 - 4. 가스용기 교체 및 배관 시공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
 - 5. 가스용기는 반드시 고정시켜 사용할 것
 - 6. 사용 중인 용기와 사용 완료된 용기는 명확히 구분할 것
 - 7. 가스 용기는 옥외 보관실에 보관할 것
 - 8.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보관을 금지할 것
 - 9. 가스용기에는 식별표를 부착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할 것
 - 10. 건물 내 설치된 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 누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 제37조의4(압력용기 안전관리) ① 소관부서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등 압력용기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 ② 압력용기란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 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인 압력용기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3.>
 - ③ 압력용기 사용 시 안전밸브를 사용하여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안전밸브 및 파열판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4.30.>
 - 1. 압력용기: 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인 압력용기 <개정 2021.12.13.>
 - 2. 정변위 압축기
 -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 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로써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 6.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 별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써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은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으로 하며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이거나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은 안전인증 비대상 품목이다. <개정 2021.12.13.>
- ⑤ 안전검사 주기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3년 이내,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의5(승강기 안전관리) ① 이사장은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 승강기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3.>
 - ② 소관부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 점검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 ③ 소관부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별로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하고 검사주기별로 그 검사의 실시 및 결함사항 등에 대한 안전검사 일지를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3.>
 - 1.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매 2년마다 실시
 - 2. 수시검사
 -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용량 또는 왕복 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 나.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3. 정밀안전검사
 -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
 -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소관부서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승강기 내부에 비치하여 임직원 등의 안전한 승강기 운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제37조의6(기타 안전관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수행 중 근로자 등이 준수할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업무별 규정 · 지침 등에 따른다.

- 제38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이사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 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 기계 등"이라 한다)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13.>
 - ② 이사장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다음 각 호의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 1.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2.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 3.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4.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 등 : 해당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
 - 5.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기계 등 : 해당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
 - 6.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가는 물림점 부분(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있는 기계 등 : 해당 부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
 - ③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등 및 방호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9조(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 기구 등의 적격품 사용 등) 이사장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KCs 인증을 받은 적격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1.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
 - 2. 압력용기 및 해당 기구의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파열판
 - 3. 고소작업대
 - 4. 용접장치의 안전기 및 자동전격방지기
 - 5.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6.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개정 2022.04.26.>
 -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개정 2022.04.26.>
 - 8.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안전대, 방음용 귀마개 등의 보호구
 - 9. 그 밖에 시행령 제74조 또는 같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 등 및 보호구 <개정 2021.12.13.>
- 제40조(안전검사) ① 이사장은 공단 소유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

계 등이 시행규칙 제1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 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2. 리프트
- 3. 압력용기
- 4. 국소 배기장치
- 5. 그 밖에 시행령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 위험기계 등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 이 발급한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 등에 붙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 기계 등이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교통재해 예방) ① 공단 사업장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건설기계, 고소작업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해진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 ② 공단 사업장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업무를 위해 차량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 제42조(외부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① 임직원 등은 출장검사 등으로 공단의 사업장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2.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로부터 제1호의 유해·위험요 인에 대한 정보 확인
 - 3. 기계·설비를 접촉 중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기계·설비를 가동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등의 조치 및 감시
 - 4. 다른 사람 및 자동차 등이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서 작업하고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
 -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통로 또는 도로 등 다른 사람 및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장소를 점유하여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표지, 바리케이드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 2.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등은 근로자 외의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
 - 3. 작업 후 해당 장소의 정리정돈 및 원상복구 실시
- 제42조2(옥외 근로자 건강관리) 관리감독자는 폭염 및 한파,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는 옥외 근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 사업주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08.15.>

- 1. 관리감독자는 폭염특보 및 주의보 발령 시 옥외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일정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2. 관리감독자는 한파특보 및 주의보 발령 시 옥외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일정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따뜻하고 깨끗한 물과 따뜻한 장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충분히 방한이 되는 의복이나 장갑, 신발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한랭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3. 관리감독자는 황사, 미세먼지 특보 및 경보 발령 시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여 근로자가 안구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4. 관리감독자는 폭설, 폭우, 태풍 등 악천후가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악천후 시 작업중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옥외노출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하며 특히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4.04.30.>
- 제42조3(휴일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 <개정 2024.04.30.>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본부장 및 안전주무부서에 주말·휴일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가급적 고위험작업(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차량계건설기계 및 하역기계 사용, 굴착 작업, 고소 작업, 건물 해체, 중량물 취급 작업)은 지양해야하며 작업 시 반드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업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제43조(외부 방문객의 안전·보건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관할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외부 방문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거나 안전·보건표지 등을 통해 지시·안내하여 외부 방문객의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 유해·위험물질 보관, 유해·위험 작업 등 외부 방문객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장소
 - 2. 미끄럼, 넘어짐,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
 - 3. 사고 발생 시 비상대피로 및 대피장소
 - 4. 사업장 내 사람과 자동차의 보행 및 운행 통로
 - 5.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6. 그 밖에 외부 방문객의 사고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임직원 등은 외부 방문객이 공단의 사업장에서 나갈 때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외부 방문객에게 특정 장소 접근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4조(안전보건점검) ① 이사장은 근로자의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 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 1. 정기 안전점검
 - 가. 관리감독자 주관 안전점검 : 월 1회(매월 4일)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안전점검 : 분기 1회
 - 다. 이사장 주관 안전점검 : 반기 1회
 - 2. 수시 안전점검
 - 가. 동ㆍ하절기 및 해빙기 등 안전 취약시기
 - 나. 장마,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전ㆍ후
 - 다. 사고 및 재해 발생 시(대상은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04.30.>
 - 라. 기타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 ③ 안전점검 내용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④ 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점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04.30.>
- 제45조(안전보건진단) ①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장이 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장이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업장의 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개선계획
 - 2. 해당 사업장의 사고 및 재해 예방과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개 선계획서를 작성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3.>
 - ⑤ 모든 임직원 등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받아 적정성이 확인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6조(비상조치계획) ①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 2. 사고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3.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 5. 비상시 대피절차
-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 9. 비상대피 후의 전 임직원 등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 제47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이사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비상조치계획을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 제48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이사장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하고 이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단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 제49조(작업환경측정) ① 이사장은 유기화합물 등의 화학적 인자, 분진, 소음, 고열 등 시행규칙 별표 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고용노동부고시「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 ③ 이사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사내 하도급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심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이사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83호서식(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와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제출한다.
- 제5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이사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조 등의 금지물질, 허가 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 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해당 물질의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 전에 근로자에게알려야 한다.
 - 1. 유해물질의 명칭
 -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 3. 취급상 주의사항
 -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③ 이사장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 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 ④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정하고 해당 유해물질과 관련한 시설·설비·기구 등의 방호조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 ⑤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모든 사람을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 1.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해당 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물질이 새는 경우

- ⑥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는 공단에서 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5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이사장은 시행규칙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 1. 제품명 및 제품과 제조사에 관한 정보
 -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3.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6. 법적규제 현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취급에 필요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7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2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이사장은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무하는 공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국민건강보 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나. 사무직 외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2. 특수건강진단 : 화학적 인자, 분진, 소음, 진동, 유해광선 및 야간작업 등 시행규칙 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무(이하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무"라 한다)에 종사하거나 종사 예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 가.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직무에 종사 예정인 사람 중 해당 유해요인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또는 이 호에서 정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을 받은 후 6개 월(시행규칙 별표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월로 한다)이 경과한 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개정 2025.01.21.>

나.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직무의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어 산업 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가 별도의 건강진단을 건의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감독관이 별도의 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직전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별도의 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임시건강진단 :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임직원들에게 유사한 질병 또는 그 자각·타 각증상이 발생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여러 명이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명령하는 경우 실시하는 진단
- ② 임직원은 이사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장은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 직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임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3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이사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제54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이사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민원처리규정」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4.04.30.>
- 제5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이사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직무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진단결과를 참고하는 등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6조(자격 또는 면허 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 이사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 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 3조 별표 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7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이사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시행령 제9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 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58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중진)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 ② 관리감독자는 재해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 전·보건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9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 · 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분리된 곳에 근로자들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0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시행령 제96조의2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시행규칙 제194조의2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관리기준은시행규칙 별표21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4.04.30.>

[본조신설 2022.12.15.] [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 <2022.12.15.>]

제7장 도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① 이사장은 도급사업 발주 시 발주하려는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② 도급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이하 "발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도급계약을 체결 시 발주부서와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발주부서와 수급 인이 상호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적격 수급인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22.12.15.>]
- 제62조(도급의 제한 및 승인) ① 이사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공단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금작업
 -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3.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② 이사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 대상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기타 도급의 제한 및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3조로 이동 <2022.12.15.>]

- 제63조(도급사업 산재예방계획 수립) ① 이사장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산재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유영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산재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4조로 이동 <2022.12.15.>]
- 제6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임직원과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단 임직원과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 2. 모든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현장
 -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
 - 2.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3.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
 - 4. 도급사업의 사고 및 재해 예방조치
 - 5. 관계수급인 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6.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5조로 이동 <2022.12.15.>]
- 제65조(도급사업의 사고 및 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단의 임직원과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5.>
 - 1. 공단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 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행 확인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확인
- 8. 제7호에 따른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시행령 제53 조의2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 정 <신설 2022.12.15.>
- 9.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신설 2022.12.15.>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제1항제7호에 따른 작업장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 등 관계법령 지정한 사업의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작업장 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6조로 이동 <2022.12.15.>]

- 제66조(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5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공단(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수급인의 사업 주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30.>
 - ② 이사장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법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4.30.>
 -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처방법
 - 4. 작업장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6. 그 밖에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22.12.15.>
 - 8. 삭제 <2022.12.15.>

9. 삭제 <2022.12.15.>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7조로 이동 <2022.12.15.>]

- 제6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제 또는 철거하는 작업 <신설 2022.12.15.>
 -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신설 2022.12.15.>
 -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시행령 제54조로 정하는 작업 <신설 2022.12.15.>
 - ② 이사장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대상 및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8조로 이동 <2022.12.15.>]

제8장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제68조(건설공사 안전·보건) 이사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수급인(시공사 포함)으로 하여금 작업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시 작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이 규정과 관계법령이 정한 제반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69조로 이동 <2022.12.15.>]

- 제69조(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0조로 이동 <2022.12.15.>]

- 제70조(안전보건조정자)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한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는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하거나 지정하고 각각의 공사를 발주한 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 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4. 각각의 공사를 발주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④ 안전보건조정자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부서의 장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1조로 이동 <2022.12.15.>]

- 제71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공단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도급사업을 주는 경우 공단 발주부서의 장 또는 도급사업주(이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착공 전날까지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2.12.15>
 -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4.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5. 그 외 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를 설치, 이전, 주요구조부분 변경 시 <신설 2022.12.15.>
 - ②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2.15.>
 - ③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용의 적정성
- 3. 추가적인 유해 ·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 ④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2조로 이동 <2022.12.15.>]

- 제72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등) ①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5.>
 - ②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가.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건설공사 발주부서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③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아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제73조로 이동 <2022.12.15.>]

- 제7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사업비 또는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1. 안전관리자등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 2. 안전시설비용(안전·보건표지,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유해·위험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보건설비의 구매 및 설치비용)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용
 - 5. 안전 · 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6. 근로자 건강관리비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②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사업비 또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공사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건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 ③ 건설공사 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현장 근로 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수급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 ④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건설공사 수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명세서를 매월 작성하도록 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사용내역을 감리원을 직접 또는 감리원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04.30.>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5조로 이동 <2022.12.15.>]

- 제74조(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 체결) ① 시행령 제59조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 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 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서 "시행령 제59조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3. 사업주가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개정 2024.04.30.>
 -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종전 제74조는 제76조로 이동 <2022.12.15.>

제9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제75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작업 도중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동료 근로자는 재해자 응급구호와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사상자의 현장 응급치료와 인근병원으로 이송
 - 2. 작업 중지 및 대피
 - 3.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4.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경찰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 <개정 2021.12.13.>
 - 5. 경찰관계관의 사고 현장 도착 시까지 현장보존을 위한 제반조치
 - 6.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현장보존이 어려울 때에는 사진촬영 또는 그림에 의한 상세한 현장기록유지
 - 7.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활동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사고의 원인이 된 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업무의 재개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재해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22.12.15.>]

- 제76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 발생을 최초로 발견한 임직원 등은 적극적으로 재해 자 응급구호와 사고 확대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긴급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조치 이후 즉시 해당 소속 관리감독자(휴일 및 야간의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관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의 책임을 지며, 사고를 은폐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보고체계는 최초 보고, 2차 보고, 관계기관 보고의 순서로 별표 2의 <산업재해 보고체계>와 같이 실시한다.
 - 1. 최초 보고 :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사고발생 인지 후 가장 신속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즉시 간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2차 보고 : 정식보고로 사고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및 처리결과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발생 후 2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나. 조치 및 전망
 - 다. 그 밖의 중요한 사항(재발 방지대책을 포함)
 - 3. 관계기관 보고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일반재해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조 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고, 중대재해는 그 즉시 전화나 팩스를 통해 국토교통 부 및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사고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8조로 이동 <2022.12.15.>]
- 제77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관리감독자는 관할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사고수습과 정확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불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 등 사고조사반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하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사고조사반을 편성하여운영할 수 있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관련자에게 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자 및 목격자는 재해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9조로 이동 <2022.12.15.>]

- 제78조(산업재해 현황보고 및 기록) ① 관리감독자는 관할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본사 산업재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본사 산업재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단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재해자의 인적사항
 - 2. 재해 형태, 사유, 상병명
 - 3. 산재 승인여부, 승인일
 - 4. 병가기간, 요양(승인)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80조로 이동 <2022.12.15.>]

- 제79조(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의 재해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 재해발생 현황 및 종합대책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임직원 등이 볼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1조로 이동 <2022.12.15.>]

제10장 위험성평가

제80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및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수행을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82조로 이동 <2022.12.15.>]
- 제81조(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 각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관계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공단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3조로 이동 <2022.12.15.>]

- 제82조(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
 -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4.04.30.>
 - 2.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3.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설 2023.08.15.>
 -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4조로 이동 <2022.12.15.>, 제82조 제1호를 제2호(종전의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종전의 제2호)로 하고, 같은조 제3호를 제5호(종전의 제3호)로 이동 <2023.08.15.>]

제83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08.15.>② 최초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8.15.>

-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으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시 <개정 2024.04.30.>
- 6. 인적사고(제3자 포함) 및 아차사고 발생 시 <개정 2024.04.30.>
- 7.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정기평가는 최초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수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8.15.>
- 1.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⑤ 상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08.15.>
-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과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하는 경우
-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 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 ·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하는 경우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5조로 이동 <2022.12.15.>,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으로 이동<2023.08.15.>]

제84조(위험성평가 방법) ①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 3. 관리감독자가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8.15.>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④ 공단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개정 2024.04.30.>
- 2.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08.15.>
- 3. 「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 사 <개정 2021.12.13.>
- 4. 그 밖에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6조로 이동 <2022.12.15.>]
- 제85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04.30.>
 - 1. 사전준비 <개정 2023.08.15.>
 - 2. 유해·위혐요인의 파악 <개정 2023.08.15.>
 - 3. 삭제 <2023.08.15.>
 - 4. 위험성 결정 <개정 2023.08.15.>
 -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87조로 이동 <2022.12.15.>]
- 제86조(위험성평가 사전준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기준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2.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3. 평가 시기 및 절차
- 4.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개정 2023.08.15.>
- 5. 결과의 기록 보존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08.15.>
-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 야 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8.15.>
- 1.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개정 2024.04.30.>
-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6.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8조로 이동 <2022.12.15.>]

- 제87조(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결정) <개정 2023.08.15.>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신설 2023.08.15.>
 -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개정 2023.08.15.>
 -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개정 2023.08.15.>
 -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이동하고 제2호를 신설 <2023.08.15.>]

-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의해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3.08.15.>
-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86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08.15.>
-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9조로 이동 <2022.12.15.>]
- 제88조(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공유) <개정 2023.08.15.>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이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근원적 대책)
 -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인터록, 방호문, 안전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 <개정 2024.04.30.>
 -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 성에 대해서만 실시)
 -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위험성이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 2. 제1호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혐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 ⑤ 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등의 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⑥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항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30.>
- 제89조(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및 보존) ① 이사장은 공단 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그

- 에 따른 조치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관할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그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2. 삭제 <2023.08.15.>
- 3. 삭제 <2023.08.15.>
- 4. 삭제 <2023.08.15.>
- 5. 삭제 <2023.08.15.>
- 6. 삭제 <2023.08.15.>
-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한다.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1조로 이동 <2022.12.15.>, <개정 2023.08.15.>]

제11장 보 칙

- 제90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이사장은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임직원, 협력업체, 및 민원인 등 제3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③ 이사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2조로 이동 <2022.12.15.>]

- 제91조(안전보건인력 전문성 강화 등)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안전·보건인력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교육 이외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전· 보건 교육 및 이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각 소속의 안전·보건 인력에 대해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3조로 이동 <2022.12.15.>]
- 제92조(안전문화 확산) ① 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여 야 한다. 안전문화란 조직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을 여기는 사고방식, 행동양식, 안전제도, 인프라 등을 통칭한다. <개정 2024.04.30.>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 안전문화 활동 등을 통해 안전문화 향상 활동을 시행 할 수 있다. 또한 안전문화가 우수한 공단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포상의 범위에는 수급업체 및 관련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3.08.15.>

- 93조(포상)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단의 관련 규정 또는 별도 방침에 의한다.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제94조로 이동 <2022.12.15.>]
- 94조(장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장계위 원회)에 회부하여 정계 조치할 수 있다.
 - 1. 관계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 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 ③ 이사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정 외에"안전사고에 관한 임원문책 규정"을 적용하며, 관계기관 등에서 사고조사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이사장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확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95조로 이동 <2022.12.15.>]

- 95조(문서 보존연한)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는 3년 (제3호, 제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제4조, 제5조, 제8조부터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08.15.>
 - 1. 산업재해 발생기록
 - 2.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5.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 ②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
 - 나 설비에 대한 해체 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

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는 제96조로 이동 <2022.12.15.>]

- 제96조(변경절차) ① 이사장은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이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변경내용을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임직원 등 에게 알려야 한다.

[제93조에서 이동 <2022.12.15.>]

부 칙 <규정 제1244호, 2019.10.25.>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09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 종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355호, 2021.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 종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374호, 2022.04.26.>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94호, 2022.12.15.>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36호, 2023.08.15.>

이 규정은 2023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65호, 2024.0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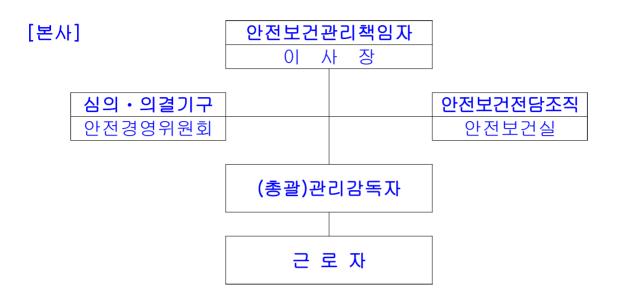
이 규정은 2024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97호, 2025.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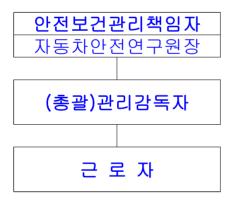
이 규정은 2025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별표 1] 제9조 관련<개정 2021.12.13., 2022.04.26., 2024.04.30., 2025.01.21.>

안전보건관리조직



[부설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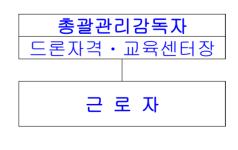
[지역본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드론센터]



■ 안전보건관리규정 [별표 2] 제76조제3항 관련<개정 2021.12.13., 2022.04.26., 2023.08.15., 2024.04.30.>

산업재해 보고체계

1. 최초 보고			
【본사】	【지역본부】	【교육센터】	【연구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A	A	A	A
해당 부서장	지역본부장, 검사소장	센터장	부서장
A	A	A	A
최초 목격자	최초 목격자	최초 목격자	최초 목격자
2. 2차 보고			
【본사】	【지역본부】	【교육센터】	【연구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A	▲	A	사고 기 최 기
해당 부서	지역본부 안전관리처* 등	교육센터 교육운영처	연구기획실 연구지원처
	A		A
	검사소, 수소전기차검사센터		해당 부서
3. 관계기관 보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필요 시)			:재해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월 내 보고
▲ 본사 안전보건실/ 지역본부 안전관리처* 등 / 교육센터 교육운영처 / 연구원 연구지원처			 재해 -나 팩스를 이용하여

- * 서울본부 : 안전사업1처
- * 경기남부·대전세종충남·대구경북·부산·광주전남본부 : 안전사업처
- * 경기북부·인천·강원·충북·전북·경남·울산·제주본부: 안전관리처

즉시 보고